경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거하여 경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"인 사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조직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1.10.01.>
 - 1.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 - 2.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,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다.
 - 3.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,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4조(회의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다.
 -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제5조(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총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- 2. 총장이 부총장 및 실·처장의 보직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인사위원회가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 -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 - 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- **제6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2 제4편 위원회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